

용인시 이미지형성 운영 규정

| | | |
|------|--------------|---------------------------------------|
| 제정 | 1997. 8. 14 | 훈령 제 44호 |
| 개정 | 1998. 10. 17 | 훈령 제 57호(지방공무원정원규정) |
| | 2000. 4. 6 | 훈령 제 86호 |
| | 2001. 2. 26 | 훈령 제107호 |
| | 2005. 10. 5 |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
| 일부개정 | 2021. 11. 15 | 훈령 제499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고유의 특성과 정서에 부합하는 세련된 이미지를 개발하여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 용인상을 구현코자 하는 “용인시 이미지형성계획”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21. 11. 15>

제2조(적용 범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미지형성계획관리대상 및 적용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10. 5, 2021. 11. 15>

[제목개정 2021. 11. 1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5>

1. “용인시 이미지형성계획(Yong In City Identity Program, 이하 “시 이미지형성계획”이라 한다)”이란 시 고유의 독특한 특징적 요소에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접목시켜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시각적 창조행위를 말한다.
2. “심벌마크”란 시의 행정이념이나 목표를 함축시켜 표현한 상징으로서 이미지 형성의 기본이 되는 도안을 말한다.
3. “로고타입”이란 “용인시”라는 문자를 특유의 서체로 고안하여 표현한 도안을 말한다.
4. “전용색”이란 시를 특징적으로 상징하는 기본색 또는 보조 색을 말한다.
5. “전용서체”란 심벌마크, 로고타입과의 조합사용의 목적, 또는 그 밖에

인쇄물이나 간판 등의 표제어로 고안된 특유의 서체를 말한다.

6. “지정서체”란 공인되어 있는 서체 중에서 전용서체의 상황 부연설명 또는 본문의 일반적 표시어로 선정된 서체를 말한다.
7. “마스코트”란 시가 지정한 동식물 또는 그 밖에 시의 상징적인 요소를 의인화시켜 시의 이미지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도안을 말한다.
8. “기본요소”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표현방식을 말한다.
9. “응용요소”란 각 기본요소를 단독 또는 조합사용하여 실제 표현객체에 응용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4조(심벌마크) ① 심벌마크의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1. 15>

② 심벌마크는 시기를 비롯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공문서

[제목개정 2021. 11. 15]

제5조(로고타입) ① 시의 로고타입은 한글, 한문, 영문의 3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1. 15>

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5>

제6조(전용색) ① 시의 이미지형성을 위한 기본색은 청색, 주황색, 녹색으로 하며, 보조색은 연두색, 회색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전용색의 사용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그 밖에 용도별로 단색 또는 조합사용하되, 인쇄색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1. 15>

제7조(전용 및 지정서체) ① 전용서체의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 지정서체는 중고딕, 태고딕, 견출고딕체로 한다.

제8조(마스코트) 마스코트의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되, 용도에 따라 변형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응용요소) 시기, 사무서식, 홍보출판물, 표찰, 유니폼, 가로시설, 차량,

실내외표지판 등에 적용하는 응용요소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표현양식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용과 미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10조(심사) 시 이미지형성계획 적용 대상 분야를 각 부서에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미지형성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0. 5, 2021. 11. 15>

제11조(심사의 기록유지 등) ① 이미지형성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심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심사 후 기안문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 10. 5>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문서심사관의 확인) 문서심사관은 문서가 시행될 때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1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7 훈령 제5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 4. 6 훈령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6 훈령 제10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훈령 제196호,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21. 11. 15 훈령 제499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11. 15>

심벌마크

심벌의 상부점은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의 용인을 상징

(색상 PANTONE 171C)

중앙의 역동적인 타원은 용인시가 첨단과 자연, 도농 복합시로써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미래비전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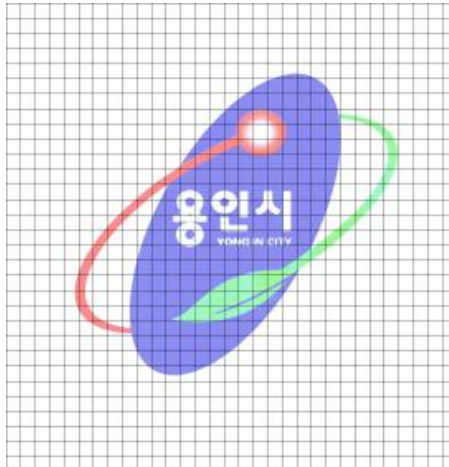
(색상 PANTONE 293C)



심벌의 하부 나뭇잎은 깨끗한 자연환경의 청정시 용인을 상징

(색상 PANTONE 3268C)

작도법



[별표 2]

로고타입

국문 로고타입

용인시
YONG I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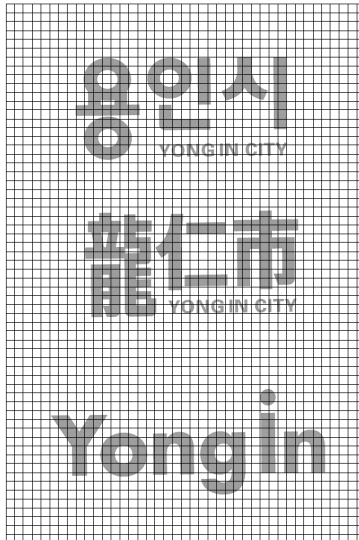
한문 로고타입

龍仁市
YONG IN CITY











영문 로고타입

Yongin

작도법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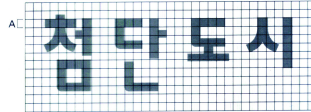
| | | 전용색상 | |
|-------|-------|--|--|
| | | ① PANTONE COLOR | ② PROCESS COLOR |
| 용인파란색 | ————— |  PANTONE 289C |  C100% + M60% |
| 용인주홍색 | ————— |  PANTONE 171C |  M80% + Y60% |
| 용인녹색 | ————— |  PANTONE 3288C |  C80% + Y40% |
| | | 보조색상 | |
| 용인연두색 | ————— |  PANTONE 381C |  C70% + Y70% |
| 용인회색 | ————— |  PANTONE Cool Grey10 |  K80% |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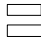


전용서체 배열규정

시 민 과
5A
 대 회 의 실
4A
 사 회 복 지 과
3A
 문 화 공 보 담 당
2A

전용서체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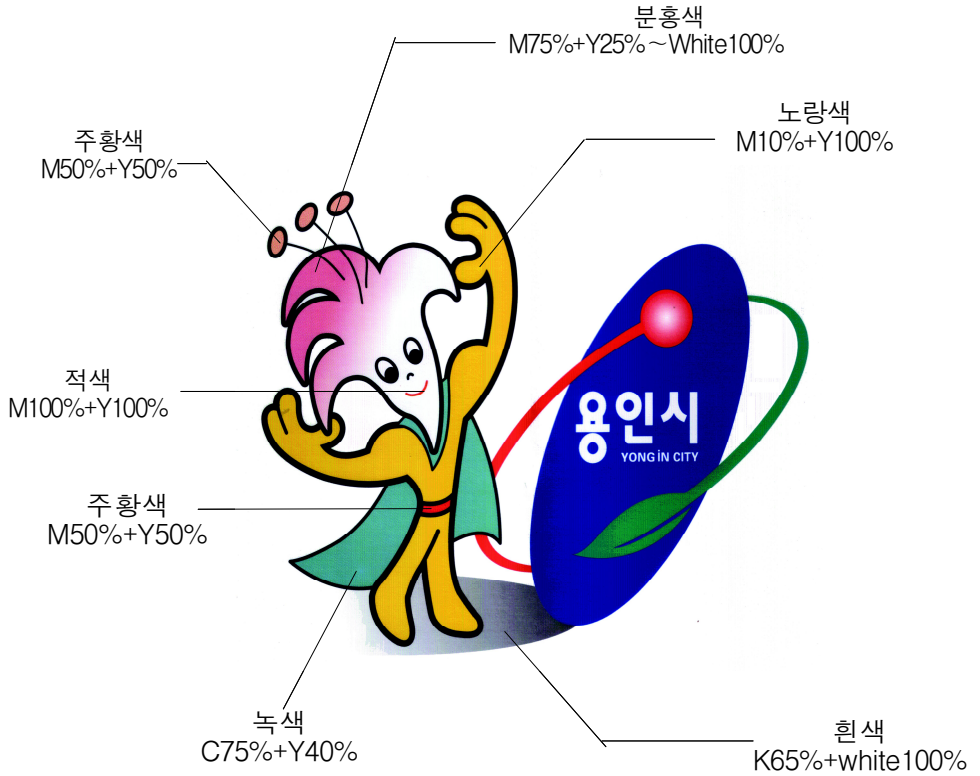


전용서체 형태분류

-  가나다어처
-  도 소 주 코 호
-  슬 본 목 품 통
-  령 산 연 청 함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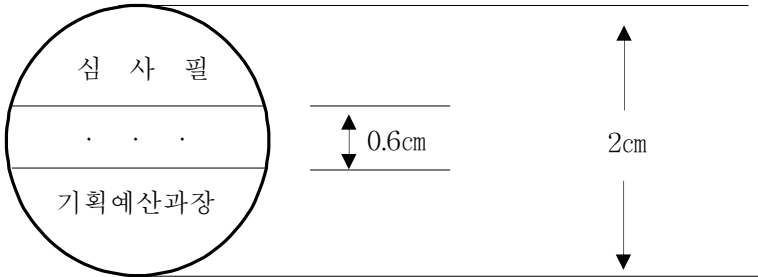
마스코트



※4원색 인쇄색(Process Color)

[별표 6]

시 이미지형성 심사인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이미지형성계획 시행 심사대장

| 일련 번호 | 제 목 | 시행부서 | 심사 년월일 | 심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